

7. 建築物의構造基準等에關한規則·建築物의設備基準等に關한規則및 標準設計圖書等の運營에關한規則中改正(案)立法豫告

建設交通部 公告 第1995-372號 1995. 12. 5

1. 개정이유

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(안)

- 건축물의 배수관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하여 배관하도록 함.
- 비상급수설비의 규모산정시 급수수요가 없는 옥내주차장 면적은 제외토록 함.

나.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(안)

- 표준설계도서를 인정할 경우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군사기밀에 관련된 군사시설의 표준설계도서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대신 국방부에 설치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.
-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에 대하여 시·도지사등이 건설교통부장관에 매년 2회 보고하던 것을 1회로 조정.

다.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(안)

- 구조안전 및 구조설계에 필요한 기타 세부 기술적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하여 기술발전 및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.
-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중 1만제곱미터

이상인 판매시설을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로 하고 6층 이상인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아파트로 확대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13일까지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, 전화: 500-4131, 참조: 주택도시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·주소

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?